

「위대한 헌신, 영원히 가슴에」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#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 시달

1. 관련: 「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('23.2.21. 관계부처 합동)
2. 위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'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' 관련 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.
3. 이에 지방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,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고,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아울러, 한국고용정보원은 법 개정 내용을 EPS시스템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개정 지침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고객상담센터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고용센터장), 한국고용정보원장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대한건설협회장



주무관

이혜영

★행정사무관

출장

외국인력담당관

이상임

국제협력관

전결 2023. 6. 28.

김은철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담당관-2264

(2023. 6. 28.)

접수

우 30117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153

팩스번호 -

/ hye1288@korea.kr

/ 비공개(5)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